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동욱 의원 외 9명

나. 의안번호 : 제1513호

다. 제출일자 : 2024. 1. 8.

라. 회부일자 : 2024. 2. 7.

2. 제안사유

-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이 드는 행동을 함으로써 버스 이용에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음
- 버스 이용과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철도안전법과는 다르게 운전자나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시민 안전에 대한 공백이 생기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관련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버스 운전사와 시민분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 시내버스 안에서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제4항)
- 나.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그 밖의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할 경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2제5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2.14 ~ 2024. 2. 18.
 - 제출의견 : 의견없음
- 라. 관계기관 의견
 - 제출의견 : 원안가결¹⁾
 - 시내버스 내 음란물 시청은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수치심을 유

1) 버스정책과-6090('24.2.19.) “제322회 임시회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제출”

발하고, 청소년 등의 성적 율리관을 왜곡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버스 내 음란물 시청 금지는 시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안에서 음란물 시청 등으로 승객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장이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할 경우 시민이 적극적인 협조를 할 수 있는 시민의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시내버스 이용 승객들의 안전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시내버스 안에서 성적(性的)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제4항)

- 최근 버스에서 음란물을 보는 행위 등 성희롱, 성적(性的)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동승한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주면서 처벌 여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²⁾가 대두되고 있음

버스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행위는 타인에게 성적불쾌감을 일으킨 행위임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에서도 직접

2) “대낮 버스서 ‘대놓고’ 음란물 시청..이거 처벌 못하나요?”-YTN('23.11.22.)

적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³⁾에 따라 실질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임

-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성적수치심⁴⁾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성적 괴롭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일반적인 도의관념과 일맥상통하다는 의미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⁵⁾ 및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⁶⁾등에 따라 열차에서는 성적수치심 등 불쾌감이나 위협 등의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선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반면 버스와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과 함께 논의가 필요할 것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성적수치심: 반드시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을 비롯한 다양한 충위의 피해감정을 포섭하는 개념 - 대법원 2020.12.24. 선고 2019도16258판결

5)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6)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1~8호선) 제6조(여객운송의 조정)

③서울교통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금지행위의 제지 및 녹화·녹음 또는 촬영을 할 수 있고,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협 등의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시내버스 안전을 위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그 밖의 행동금지에 대한 시민의 협조 관련(안 제10조의2제5항)

- 안 제10조의2제5항은 시장이 시내버스 안전을 위하여 공중⁷⁾이나 여객⁸⁾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할 경우 시민의 협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⁹⁾ 및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¹⁰⁾에서 운수종사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해 여객의 특정행위 제지 또는 필요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시내버스 안전 향상과 이용시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7) 공중(公衆):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

8) 여객(旅客): 기차, 비행기, 배 따위로 여행하는 사람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2. 마.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다른 여객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2)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3)~5) (생략)

10)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11조(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시내버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6.(생략)

7. 기타 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
제12조(운송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1. 여객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운수종사자의 제지 또는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2.~5.(생략)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동 개정조례안에서 시장이 금지하는 대상의 범위를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그 밖의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행동’이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바, 실제 조례 시행 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고민도 수반되어야 할 것임